

시 흥 거 모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재 협 의)
- 초 안 요약서 -

201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시흥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정착기반이 마련되도록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코자 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km 이내에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및 국도39호선이 위치하고 지구 남측 1km 이내에 서울지하철4호선 신길온천역이 있으며 동측으로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광역접근성이 양호함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1차('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차('18.12.19)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서 3차('19.05.0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계획지구는 30만호 계획 이전에 발표한 수도권 14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지구(6.2만호)에 해당하며, 금회 계획지구 남측에 연접한 안산신길2지구(계획중)는 총 11만호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해당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부와 협의완료하였음(2018.12.0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3288)
- 금회 계획 변경으로 재협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구지정 고시(2018.12.31)시 남서측 일부지역(약 222,000m²)을 지구계에서 제외하였으나, 금회 해당지역을 편입하여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당초 협의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약 222,000m²)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000m²)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함

〈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비고
<p>제20조(재협의)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1.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p> <p>2.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p>제28조(재협의 대상)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p> <p>1.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를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비고</p> <p>○ 해당사항 없음</p> <p>○ 해당 -제외하도록 한 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금회변경면적 : 약 222,000㎡ (10,000㎡ 이상) ·변경비율 : 14.6% (10% 이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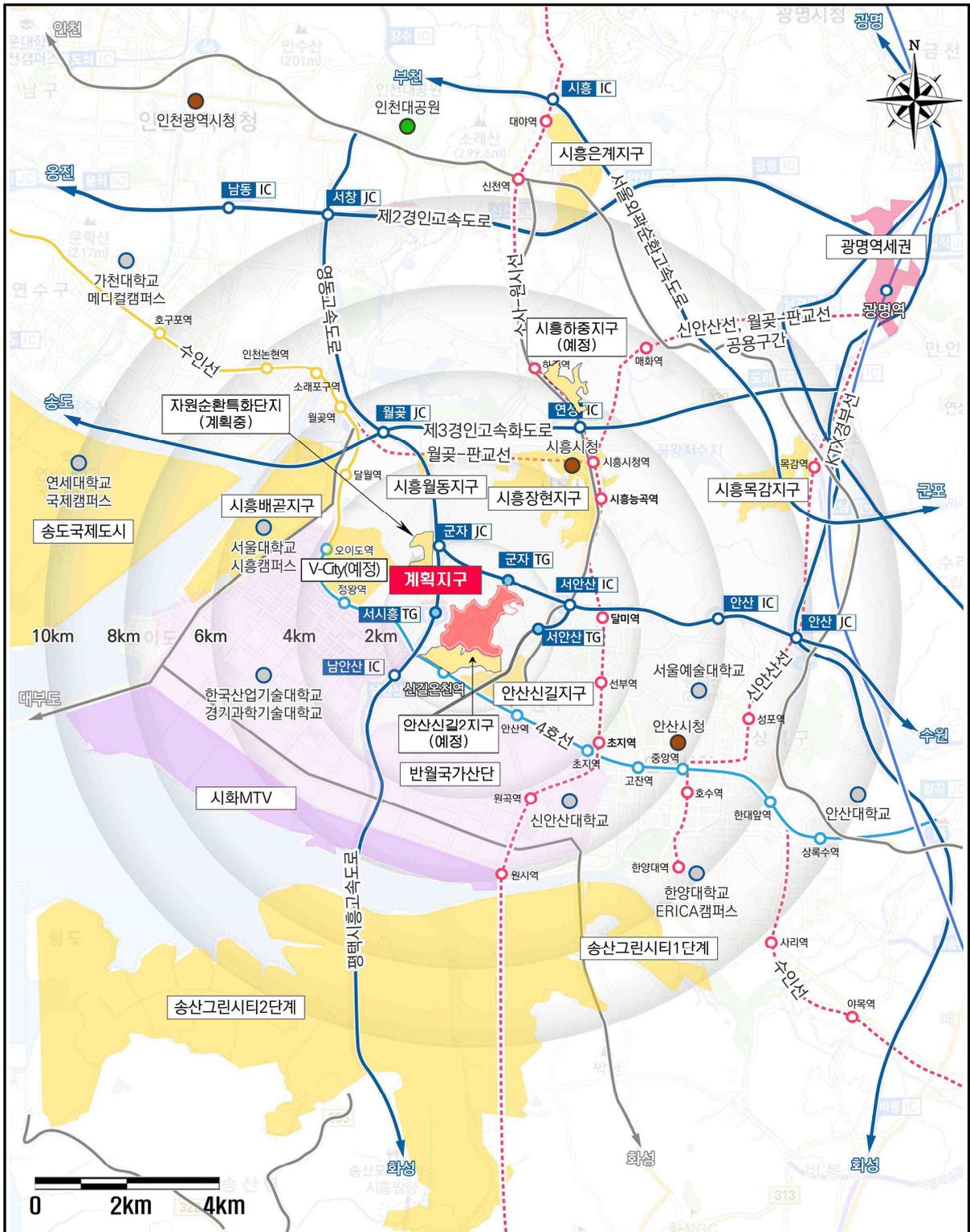
다.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 계 획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 계 획 내 용

구분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10)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시(2019.09)	비고(증감)
계획면적(m ²)	1,522,150	1,522,674	524
개발제한구역(m ²)	1,515,676	1,516,218	542
계획인구(인)	26,833	24,950	-1,883
계획세대(호)	11,140	10,700	-440

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018.12.04) 후 계획지구 남서측 부지일부 지역(면적 약 222,000m²)을 제외하고 지구지정 고시(2018.12.31)하였음(「10.3.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참조)

- 사 업 기 간 : 2018~2024년
- 계획수립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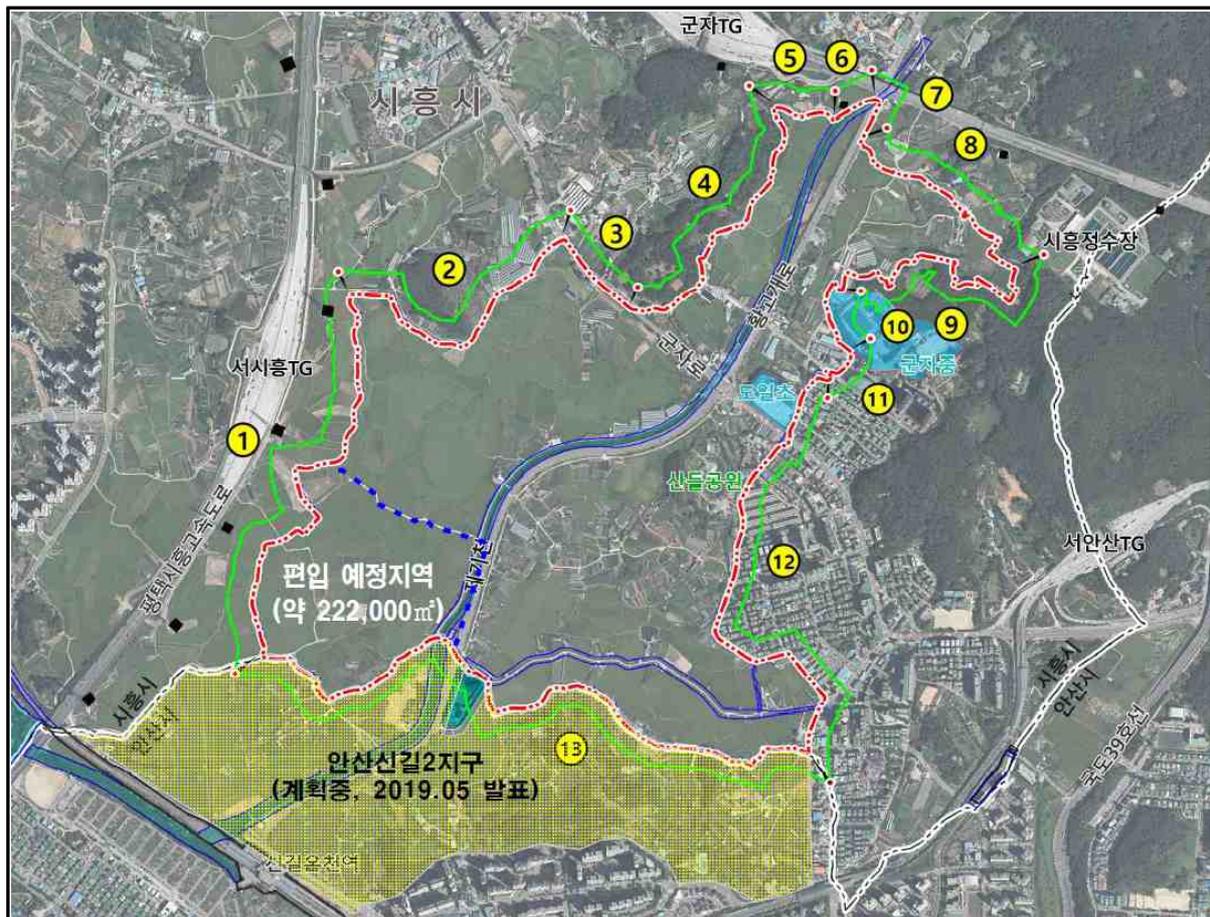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라. 지구계 경계 설정

- 지구계 설정시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해 부정형의 지구계는 정형화하되 주변에 기개발된 지역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지구는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산지(보전산지 GB 2등급) 경계,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경계를 설정하였음

〈표 2〉 지구계 경계 설정 사유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①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⑧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계 (미포함)
②	도로(농로) 경계 (미포함)	⑨	산지(GB 2등급) 경계(미포함)
③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 (포함)	⑩	도시계획시설(군자중학교) 경계 (미포함)
④	산지(GB 2등급) 경계(미포함)	⑪	개발제한구역 경계 (포함)
⑤	현황여건(도로)을 고려한 지적경계 (미포함)	⑫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 (포함)
⑥	소하천구역 경계(포함)	⑬	안산시, 시흥시 행정구역 경계 (계획중인 안산신길2지구와 연계)
⑦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 (포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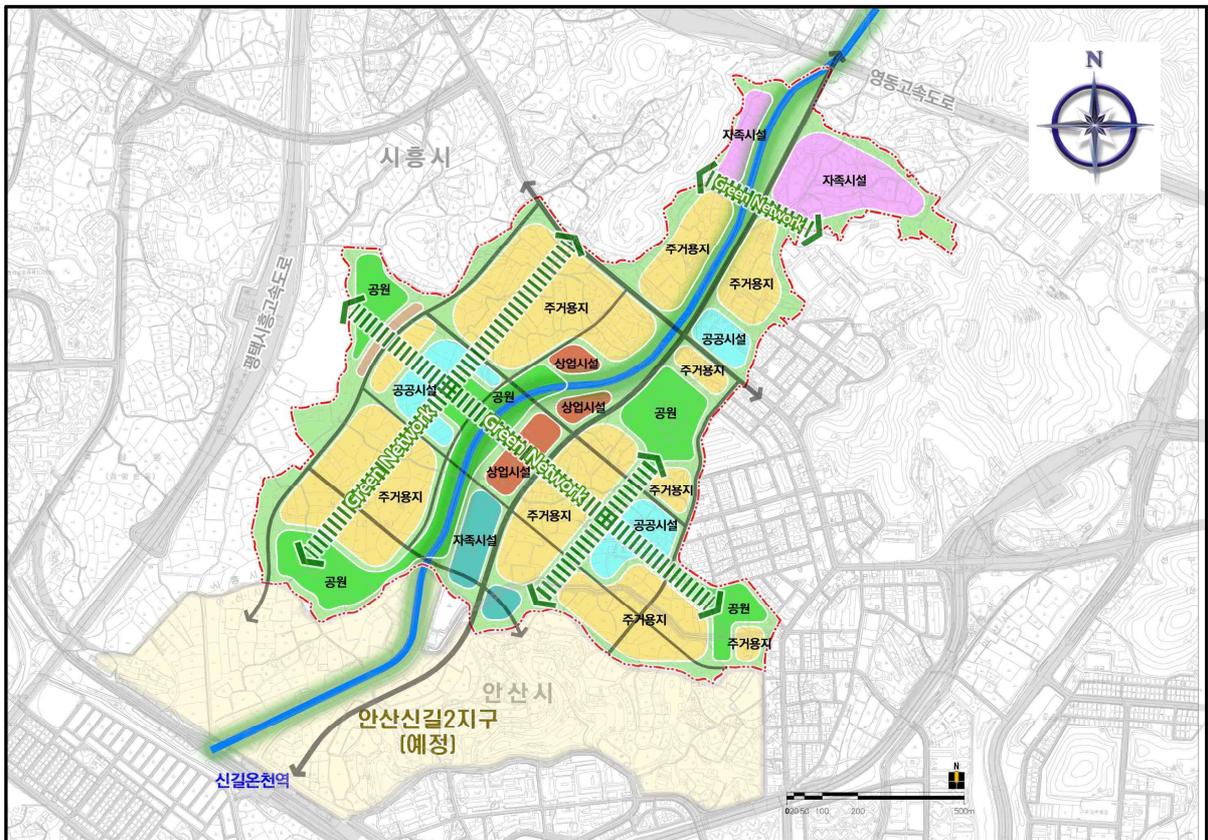


(그림 2) 지구계 경계 설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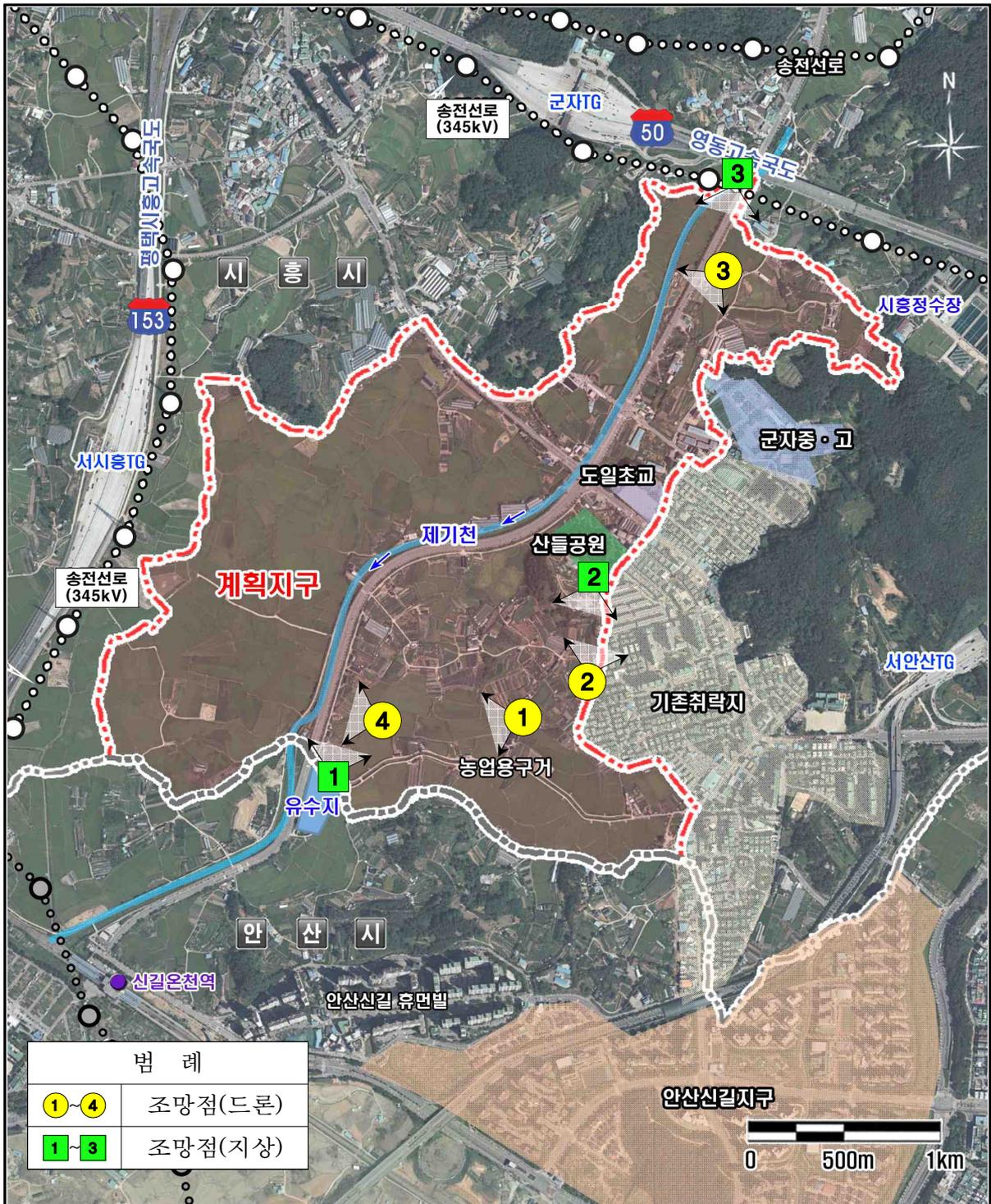
마. 토지이용구상(안)

〈표 3〉 토지이용구상(안)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계	1,522,674	100.0	
주택건설용지	549,186	36.1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시설용지	28,751	1.9	일반상업시설, 주상복합용지
자족시설용지	103,680	6.8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용지	452,119	29.6	공공청사,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주유소, 주차장, 도로 등
공원녹지	388,938	25.6	공원, 녹지, 하천



(그림 3) 토지이용 구상안



(그림 4) 계획지구 및 주변 전경사진 조망점 위치도



(그림 5) 계획지구 현황 사진(드론)



(그림 5 계속) 계획지구 현황 사진(드론)



(그림 6) 계획지구 현황 사진(지상)

2. 지역개황

- 계획지구 및 시흥시의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으로 환경관리해역(약 0.7km 이격), 시흥갯벌(약 4.0km 이격)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 계획지구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지정 현황	
		시흥시	계획지구		
대기 환경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환경규제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	○	○ 해당함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 해당함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	○ 해당함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	○ 해당함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	○ 경유 : 0.1%이하 ○ 중유 : 0.3%이하
수 환경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부고시 제2018-6호)	×	×	○ 해당사항 없음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 약 0.7km 이격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 지역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	○	○ “나” 지역 해당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관리구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역	○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 생태 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	○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	×	○ 시흥갯벌 - 약 4.0km 이격
	야생생물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해당사항 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 해당사항 없음
	천연기념물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	×	○ 해당사항 없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제7조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	×	×	○ 해당사항 없음
특정도서	○ 산림보호법 제7조	×	×	○ 해당사항 없음	

3. 대안 및 입지대안

가.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악화 등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의 안정적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미수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상의 변화 없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전체 3등급지역임 ○ 녹지·공원 조성 및 기존 하천 존치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다수의 건축물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기존시가지와 접하고 있어 개발압력과 개발여건이 높아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사면안정대책 등 저감방향 수립을 통해 훼손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기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별적 개발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부정적 영향 예상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별적 개발시 자연경관의 부정적 영향 예상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됨 ○ 저감방향 수립으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개발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며, 저감방향이 수립·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기준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도모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원활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선정안	○	

나.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3개를 검토한 결과, 대안1로 선정되었음

〈표 6〉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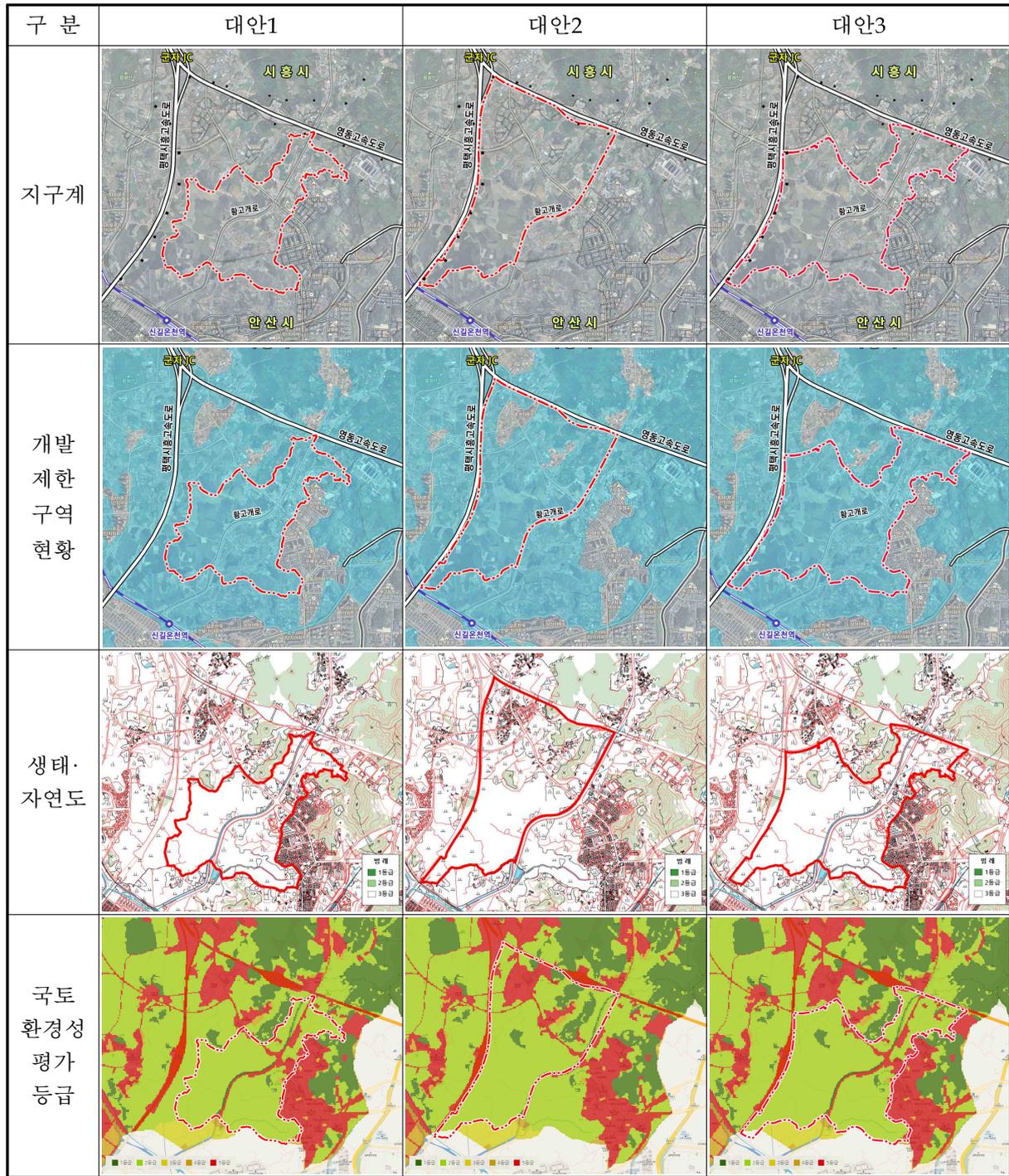
구 분	대안1(선정안)	대안2	대안3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변 소음저감, 송전선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원, 지원시설 등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기존 시가지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등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 배치함 ○서측 및 남측 경계에는 공원·녹지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여 주변 산단에 의한 민원발생 최소화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서측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배치함 ○지원시설 인근에 청년주택, 주상복합, 문화시설 등을 배치하여 청년중심의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함 ○하천을 따라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을 집중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린네트워크를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함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를 위한 배치계획을 수립함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공공시설 배치를 통해 소외된 지역의 거주환경여건 개선이 용이함 ○공공시설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및 편의성을 향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시설, 청년주택, 문화복지시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함 ○하천을 중심으로 공원과 연계되는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대상지 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을 중심으로 주거용지, 상업시설, 근린공원 등을 배치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함 ○공공시설을 기존 시가지 인근에 배치하여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존 시가지와의 상생기회 마련함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의 지원시설과 신길은천역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시 황고개로의 정체가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 영동고속도로변 주거용지 배치로 소음 등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됨 ○동서간의 녹지축 단절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원 녹지축 연계성이 부족함 ○통과교통 발생이 우려되며 그에 따른 도로 소음 영향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측 평택~시흥고속도로변 주거용지 배치로 소음·먼지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됨 ○북측의 지원시설과 신길은천역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시 황고개로의 정체가 우려됨 ○황고개로에 과도한 통행이 집중되어 정체가 우려됨
토지이용구상(안)			
선정안	○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공원,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능하고 ○적정 개발밀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계획부지가 지닌 제약조건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1로 선정하였음 		

다.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를 위하여 지구계에 대한 3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7〉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면 적	○1,522,674m ²	○2,036,688m ²	○2,095,038m ²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동측 기존시가지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외된 기존 시가지지역과 계획적 연계개발을 통하여 시흥시 균형개발이 용이함 ○고속국도 및 고압송전선로와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소음 및 전과장해 영향여부 측면에서 유리함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 연속성 유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된 외부연계도로로 인근지역과의 통행이 유리하며, 정형화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 기준(도로 등)이 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된 외부연계도로로 인근지역과의 통행이 유리함 ○지구경계의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여건 마련이 가능함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경계가 부정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다소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장물이 다소 많으며, 토지보상비 등이 증가됨 ○영동고속국도 및 평택~시흥고속국도와 인접해 소음저감 시설 설치 필요함 ○송전선로와 인접하여 전자파 영향이 예상됨 ○지구내 GB환경평가 2등급지 훼손인 우려됨 ○법정보호종(저어새)이 출현한 농경지가 포함되며, 기존 시가지(거모동)와의 단절로 기존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결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내 철탐이 포함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영동고속도로 및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저감 시설 설치가 필요함 ○GB환경평가 2등급지 포함되며 농경지 편입이 가장 많음
GB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편입 : 1,516,218m² ○GB외 : 6,45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편입 : 1,881,678m² ○GB외 : 155,01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편입 : 2,088,582m² ○GB외 : 6,456m²
생태·자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등급 훼손 없음 - 1등급 : 없음 - 2등급 : 없음 - 3등급 : 1,522,67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2등급 지역 일부 편입 - 1등급 : 없음 - 2등급 : 158,501m² - 3등급 : 1,878,18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2등급 지역 일부 편입 - 1등급 : - - 2등급 : 52,834m² - 3등급 : 2,042,204m²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등급 지역이 적게 편입 - 1등급 : 40,734m² - 2등급 : 1,328,408m² - 3등급이하 : 153,53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등급 편입이 많음 - 1등급 : 202,501m² - 2등급 : 1,503,544m² - 3등급이하 : 330,64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등급 편입이 가장 많음 - 1등급 : 83,819m² - 2등급 : 1,823,575m² - 3등급이하 : 187,644m²
선정안	○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과의 연속성 및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GB환경평가등급 2등급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의 편입을 제한하여 환경훼손 방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및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조성이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하였음 		



(그림 7) 입지대안 위치도

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의 선정 및 대상지역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음
- 환경영향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영향 인자와 환경영향 항목을 분석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항목을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표 8〉 평가항목 및 선정 사유

평가항목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지구계 및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자연 환경 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변화, 주요 생태축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 계획수립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 의 안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 -연료 사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 수질 -계획수립시 점·비점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 ○ 소음·진동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주변 소음 오염원에 따른 계획지구내 정온시설 소음 영향 예상 및 소음환경기준 등과의 부합성 검토 ○ 토양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수립 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수립 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용수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변화 예상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일조 및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영향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 2018.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하였음

〈표 9〉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조사범위 설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시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수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수립에 따른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및 수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제기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주2)} -기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차량운행 및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남측 <u>안산신길2지구(예정)</u> 운영에 따른 누적영향 고려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 이내
		○수질 -계획수립에 따른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제기천)
		○소음·진동 ^{주3)} -계획수립시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영향 예상지역 -계획지구 서측 평택~시흥고속국도(제2서해안) 및 북측 영동고속국도 운행차량에 의해 발생 되는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남측 <u>안산신길2지구(예정)</u> 운영에 따른 누적영향 고려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표 9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조사범위 설정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 의 안 정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토양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수립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계획지 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지역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 계획지구 (주유소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시행에 따라 인구·주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여부 검토 -계획지구 서측 및 북측에 위치하는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주4)} -계획지구 건축물(공동주택 등) 배치에 의한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에 제시된 영향범위는 식물상 100m, 동물상 300m를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300m 이내에 고속국도 및 기존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물상 및 동물상 300m로 선정하였음
2. 대기질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대기질 20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대기오염 발생원인 고속국도, 국도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k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소음·진동 30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소음발생원인 고속국도, 국도 등의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1km로 설정하였음
4. 전파장해 조사범위 :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방안, 2006.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345kV 고압송전선로에 따른 영향범위는 100m 이격시 2mG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지구 인근 송전선로 위치 등을 고려하여 500m로 설정하였음

5. 환경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향

〈표 10〉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종합평가 및 결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아시안하이웨이 등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 ○ 행정계획 수립여부에 따른 “계획비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 계획입지를 달리한 “입지” 측면의 대안설정·분석은 적정함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지역이 인위적인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작지 및 나지지역으로 주변 생태계와 단절되어 있어 생물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서식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계획지구 및 주변의 보호지역 및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서식지 훼손, 감소 등의 심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 계획지구의 입지로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지구 내에는 황조롱이,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이 분포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출현한 종으로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농경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계획지구를 통과하는 주요 능선축(백두대간·정맥)은 없으며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녹지축 단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후 농촌경관에서 도심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수환경의 보전	○ 수환경 관련 보호구역이 분포하지 않아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홍수량 증가에 따른 제기천 영향은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최소화할 계획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에너지사용(난방, 급탕, 취사에 의한 연료사용) 및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누적영향으로 대기오염물질(PM-10, PM-2.5, NO₂ 등)의 발생이 예상되나 공원·녹지 조성, 환경정화수중 식재,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환경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오수는 전량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시흥맑은물관리센터)로 연계 처리하고 우수배제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등을 계획함으로써 수용하천인 제기천과 시화호 연안의 수환경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표 10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종합평가 및 결론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p>○소음·진동</p> <p>-계획지구 인근에 위치한 외부도로(평택~시흥고속국도, 영동고속국도) 및 내부도로(황고개로, 군자로)에 의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나 세부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할 계획임</p> <p>-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상세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기타 저감대책(추가이격 및 완충녹지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시 소음환경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p>
		<p>○토양</p> <p>-계획지구 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이 1개소가 위치함</p> <p>-지장물 철거시 관련법에 의거 오염토양의 오염물질 종류, 농도, 오염량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방법을 선정후 처리토록 할 계획임</p>
		<p>○환경기초시설 적정성</p> <p>○계획지구내 필요 용수는 시흥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고, 발생 오수는 시흥맑은물관리센터로 연계처리,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p>
		<p>○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p>○계획지구는 시흥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시행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관련법 및 시흥시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p>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p>○계획지구는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 등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의 편입을 제한하였으며, 고속국도 및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음</p> <p>○토지이용계획시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입지,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변 공원과 지구내 공원, 녹지 및 하천으로 연계되는 녹지축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p> <p>-송전선로 주변으로 비주거시설 배치, 주거용지는 송전선로와 약 350m 이상 이격되도록 친환경적 토지이용구상(안) 수립</p> <p>-계획지구 건축물 배치 및 층고계획 수립시 건축법, 관련 판례 및 시흥시 건축 조례 등을 참조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임</p>